

#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80

제출년월일 : 2015. 11. / 7.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기존 대부분도관광안내소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및 안산시 관광홍보차량 등 유사 시설이 확충 운영됨.
-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사업자 및 주민 교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관광통계 및 관광주간 등 관광 진흥사무를 신규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 상기 사업을 망라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관광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사업 현황】

사업명	As-Is	To-Be
1. 대부분도관광안내소	· 민간위탁 운영	
2.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 관광과 직영	
3. 안산시 관광홍보차량	· 관광과 직영	
4.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 미실시	⇒ · 민간위탁 운영

\* 대부분도관광안내소 :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단체 공개 모집  
\*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 기존 관광과 직영 운영에서 민간위탁사업 전환  
\* 안산시 관광안내차량 : 기존 관광과 직영 운영에서 민간위탁사업 전환  
\*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 관광수용태세, 관광 진흥사무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  
(당초 12색 오감테마 사업은 향후 재정 및 여건 판단 추진)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기 간 : 2016. 1. ~ 2018. 12. 31.(3년)
- 사업장소 : 안산시 일원(근무장소 : 대부도관광안내소 등)
-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사업
- 주요내용 :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1식
  -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 대부도관광안내소,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차량
  - 관광홍보사업
    - 관광수용태세 교육 및 주민 견학사업
    - 관광통계, 관광주간, 단체협력, 관광업 홍보사무 등
- 年 소요예산 : 187,495천원

### 나. 주요 위탁내용

#### ○ 대부도관광안내소

- 운영기간 : 연중 10:00 ~ 17:00(주 35시간, 주말 근무)
- 운영인력 : 관광안내원 2명
- 사업내용 : 시설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
  - 안내원 채용(2명) 및 인력 · 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 내방객(전화 포함) 관광안내, 시정 홍보, 각종 편의제공
  - 대부도 관광객 대상 ‘느린우체통’ 사업, 시설 유지관리 등

#### ○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 운영기간 : 연중 10:00 ~ 17:00(단, 월요일 휴관)
- 운영인력 : 무인(문화관광해설사 2인 해설 근무)
- 사업내용 : 시설 및 물품 관리
  -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관광 홍보물 수요파악 및 배부,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관리 등

## ○ 관광홍보차량

- 운영기간 : 주 4회 내외(1일 7시간)
- 운영인력 : 홍보차량 운행요원 2인 내외
- 장 소 : 핵심 관광시설, 행사장, 대중 밀집지역
- 사업내용 : 차량운행 및 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
  - 안산시 주요 관광명소, 관광지, 교통·숙박 등 관광정보 제공
  - 관광(축제) 홍보물 배포 및 안내, 안산시 홍보 영상물 상영
  - 관광홍보차량 운행 및 차량 유지관리 등

## ○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 운영기간 : 연중 09:00 ~ 18:00(주 40시간)
- 장 소 : 대부도관광안내소 2층 등
- 운영인력 : 총괄간사 1명
- 사업내용 :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1식

위탁사무 총 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부도관광안내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차량 총괄 관리</li><li>• 예산집행 및 관광안내원(운행요원) 관리, 자부담 사업 등</li></ul>
관광수용태세 교육 및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광수용태세 교육(주민 및 관광사업체 대상 / 월 1회)</li><li>• 국내 우수 관광지 벤치마킹(주민 및 관광사업체 대상 / 2회)</li></ul>
관광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내 주요 관광시설 관광객 통계 작성(월 1회)</li><li>• 무인계수기 통계 관리 및 대부도 차량 진·출입 DB 작성</li></ul>
관광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광주간 업무 총괄(봄, 가을)</li><li>•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관광시설 연계 홍보 등</li></ul>
관광단체 협 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내 관광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무</li><li>• 지역관광협의회 창립 지원(관광진흥법 제48조의9)</li></ul>
관광시설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내 관광시설 통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사업</li><li>• 관광시설 홍보 마케팅 지원 사무</li></ul>

## 다.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7,495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사 항	금액(안)	비고
	<b>합계</b>	<b>187,495</b>	
	<b>소계</b>	<b>95,126</b>	
대부도 관광안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안내원(2인) 인건비 및 보험료 등</li> <li>• 느린우체통 운영 사업비</li> <li>• 관광안내소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li> </ul>	51,782 5,000 38,344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홍보관 시설 유지관리비</li> <li>• 집기류 구입비</li> </ul>	2,560 1,960 600	
관광홍보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안내요원(2인) 활동비</li> <li>• 차량 유지관리비</li> </ul>	22,640 14,560 8,080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간사(1인) 인건비 및 보험료 등</li> <li>• 관광수용태세 교육, 견학 및 간담회</li> <li>• 홍보물 제작 및 관광사무</li> <li>• 집기류 구입비 및 사무운영비 등</li> </ul>	67,169 37,669 15,200 9,400 4,900	

\* 세부내역 : 붙임 3

##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관광안내소)**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
5. 관광 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광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3. 관광 분야 교육 운영
4. 관광 관련 공모전
5. 시티투어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시행일 : 2015. 8. 19.]

##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주민교육 및 관광 홍보사업 등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지역 실정에 밝은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 불임자료**

1. 위탁시설 세부 현황 1부.
2. 방침문서 1부.
3.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안) 1부.
4. 대부도관광안내소 위탁운영 현황(2015. 현재) 1부.